

선수등록 변경내용

현행	변경내용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등록자격</p> <p>제6조 학생선수의 등록은 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①②③④⑤⑥⑦⑧생략)</p> <p>⑨ 소속학교의 해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타 학교로 이적한 경우에는 각종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하며(1학년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는 동대회 참가요령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등록변경</p> <p>제12조 선수등록은 1회 등록으로 영구히 유효하며.....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에 변경을 할 수 없다. (①②③④ 생략)</p> <p>⑤ 학교를 퇴학하고 취직하거나 직장을 퇴직하고 입학 또는 직장이전 및 군제대로 인한 복귀의 경우에는 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타 단체로 이전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일로부터 3개월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p> <p>제13조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p> <p>제 6 장 외국인선수등록 자격 및 대회참가</p> <p>제14조 외국인 선수등록 자격 (①②③④ 생략)</p> <p>제15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기타</p> <p>제16조, 제17조 생략</p> <p>제18조 본 규정은 2002년도 1월 25일 대의원총회 승인일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등록자격</p> <p>제6조 학생선수의 등록은 교육법에 의거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①②③④⑤⑥⑦⑧생략)</p> <p>⑨ 소속학교의 해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타학교로 이적한 경우에는 각종경기대회의 참가는 전소속장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일로부터 당해 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하며, 1학년(신입생)에 한하여 현재 재학중인자의 대회참가는 학교 재적기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는 동대회 참가요령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등록변경</p> <p>제12조 선수등록은 1회 등록으로 영구히 유효하며.....소속단체에 변경을 할 수 없다.</p> <p>⑤ 학교를 퇴학하고 취직하거나 직장을 퇴직하고 입학 또는.....타 단체로 이전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일로부터 15일간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실업선수의 계약</p> <p>제16조 실업선수의 계약은 5년으로 하며 5년내의 무단 이적을 금지한다.</p> <p>①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변환된다. 단, 계약기간내 타 단체로의 이적은 전 소속의 단체장의 직인과 감독의 서명이 있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최초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후의 계약은 3년으로 한다.</p> <p>③ 계약금에 대한 등급 규정은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에서 정한바에 따른다.</p> <p>④ 상기 계약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해당 단체 및 선수, 감독, 코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기타</p> <p>제16조, 제17조 생략</p> <p>제18조 본 규정은 2010년도 1월 27일 대의원총회 승인일부터 적용한다.</p>	<p>- 제5장 등록변경 수정으로 인한 자구수정</p> <p>- 문화관광부장관내용 삭제</p> <p>3개월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당해년도 12월 계약이 만료되고 타소속으로 이적할 경우 차기년도 초에 개최되는 각종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변경</p> <p>- 조항신설</p> <p>- 실업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설</p>

▶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선수계약 규정

1. 선수의 계약은 5년으로 하고 5년내의 무단 이적을 금지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들은 자유계약선수로 변환된다.
단, 계약기간 내에 이적은 감독의 서명과 소속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한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
2. 계약금에 대한 등급을 지정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하거나 10위안에 랭크시 1억원
 - 아시안게임 상위 안에 랭크시 7천만원
 - 국내 A급 5천만원, B급 3천만원
3. 계약기간 5년 이후 자유계약 선수들은 재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상기 규정을 어길 경우 소속 및 감독, 코치, 선수는 실업연맹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 기준(예고기간 1년)